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6월 2일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90호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의 결원충원 시 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

제64조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징계처분기간 동안 승진의 제한에 관한 징계의 종류 중 ‘강등’에 관한 사항을 신설

제66조 직위해제 사유 중 성폭력범죄, 예산 및 자금 횡령, 배임 등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사유를 신설

제82조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의 종류 중 ‘강등’에 관한 사항을 신설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